

2024년 재무위험관리사 문제집 정오표

[2024년 7월 5일 기준]

페이지	정정 전	정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핵심탐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차주구분</th><th>차입기간</th><th>차입금액</th><th>기타조건</th><th>신고등기관</th><th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리법인</td><td>제한없음</td><td>3천만불 이하 3천만불 초과</td><td>과거 1년간 누계 과거 1년간 누계</td><td>외국환은행신고 기획재정부신고</td><td>지정은행 지정은행경유</td></tr> <tr> <td>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</td><td>제한없음</td><td>제한없음</td><td>타인담보 / 보증 포함</td><td>한국은행신고</td><td>지정은행경유</td></tr> <tr> <td>정유 / 외화천역기스 수입업자</td><td>단기</td><td>제한없음</td><td>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</td><td>외국환은행신고</td><td>지정거래제외</td></tr> <tr> <td>외국인투자기업</td><td>단기</td><td>투자금액 100% 투자금액 50%</td><td>고도기술업체 일반제조업체</td><td>외국환은행신고 외국환은행신고</td><td>지정은행 지정은행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차주구분	차입기간	차입금액	기타조건	신고등기관	비고	영리법인	제한없음	3천만불 이하 3천만불 초과	과거 1년간 누계 과거 1년간 누계	외국환은행신고 기획재정부신고	지정은행 지정은행경유	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제한없음	타인담보 / 보증 포함	한국은행신고	지정은행경유	정유 / 외화천역기스 수입업자	단기	제한없음	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	외국환은행신고	지정거래제외	외국인투자기업	단기	투자금액 100% 투자금액 50%	고도기술업체 일반제조업체	외국환은행신고 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 지정은행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차입금액 3천만불 이하, 3천만불 초과 -> 5천만불 이하, 5천만불 초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.</p>
차주구분	차입기간	차입금액	기타조건	신고등기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리법인	제한없음	3천만불 이하 3천만불 초과	과거 1년간 누계 과거 1년간 누계	외국환은행신고 기획재정부신고	지정은행 지정은행경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제한없음	타인담보 / 보증 포함	한국은행신고	지정은행경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유 / 외화천역기스 수입업자	단기	제한없음	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	외국환은행신고	지정거래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인투자기업	단기	투자금액 100% 투자금액 50%	고도기술업체 일반제조업체	외국환은행신고 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 지정은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1	<p style="color: red; text-align: center;">[핵심탐구 표 아래 내용 보강]</p> <p>1. 영리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-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 · 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<p>5천만불 이하*</p> <p>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(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(현지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),</p> <p>5천만불 초과**</p> <p>**다만, 미화 5천만불(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,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. <p>2. 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 (기타)</p> <p>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36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[핵심탐구 현지금융 (1) 내용을 보강합니다.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"현지금융"이라 함은 거주자 및 제7-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(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<p>(1) 현지금융을 받은 자의 보고(제7-14조의2)</p> <p>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(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,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)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-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주자의 현지법인(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) - 거주자의 해외지점(제9-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) -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변경 보고 또는 신고를 하거나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-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(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)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 	
136	<p>[18번 문제]</p> <p>다음 중 현지금융에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?</p> <p>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</p> <p>②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 자 하는 경우</p> <p>③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④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</p>	<p>[18번 문제]</p> <p>다음 중 현지금융에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?</p> <p>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</p> <p>②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 자 하는 경우</p> <p>③ 거주자인 해외지점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</p> <p>④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</p>
136	<p>[출제포인트]</p> <p>②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사항이고 ③, ④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사항이다.</p>	<p>[출제포인트]</p> <p>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신고 면제대상이다.</p>
143	<p>[3번 문제 해설]</p> <p>동일자 ·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달러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제외된다.</p>	<p>[3번 문제 해설]</p> <p>동일자 ·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달러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제외된다.</p>

143	<p>[5번 문제]</p> <p>①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[5번 문제]</p> <p>①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143	<p>[6번 문제]</p> <p>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여기서의 일정한 금액은?</p>	<p>[6번 문제]</p> <p>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여기서의 일정한 금액은?</p>
145	<p>[12번 문제]</p> <p>②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[12번 문제]</p> <p>② 영리법인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
	끝	끝